

제1조 입소절차

1)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 등급(3,4,5 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 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대상자 유형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①기초생활 수급노인	→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통보)	→	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 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 서비스 실시
②의료급여 수급노인								
③ 일반노인	→							

2)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급여제공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처방전 등)
(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에정일의 30일전 검진결과서)
-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 CCTV 설치운영 동의서
- ㉥ 입소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경우)

3) (초기면접) 입소 전 노인과 그 가족과의 초기면담을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4) (입소계약)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5) (입소 및 생활안내) 급여제공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제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기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공단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카톡, 문자, 등으로 보호자에게 비용청구 전까지 안내하고, 비 급여(식재료비 등)변경 시 보호자에게 15일전까지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3조 계약 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 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급여제공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입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입소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의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조 입소자 보호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1) 입소노인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